

# 2004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82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27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2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
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의 목표액 300백만원(5개년 장기계획으로 조성), 매년 60백만원 적립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정기예탁
- 기타 재원조성은 이자수입, 기타수익금으로 충당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계획안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코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도록 되어있고, 지방자치법 제35조,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,
- 2004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0백만원씩 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목표금액

300백만원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개발·연구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, 여성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지원,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, 설치근거, 목적 및 사용용도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나,

- 향후, 저금리에 따른 기금예치상황 및 관리방법, 300백만원의 기금목표액 조성 이후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의 조성목적과 사용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할수 있을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**

- 2003. 12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